

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 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4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5. 30.
제출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평창군청년연합회의 복지·사기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지원범위를 규정하여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, 인용법령 및 자치법규명을 현행화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단체 경비지원 사항 추가: 안 제3조

1) (기존) 역량강화, 봉사활동 권장

1) (개정) 역량강화, 봉사활동 권장 및 복지 증진 등

2) (신설) 청년단체의 복지 향상과 친목 도모를 위한 한마음대회, 체육대회 경비

나. 인용법령·자치법규명 현행화: 안 제3조 ~ 제5조

1) (기존) 자원봉사활동기본법 → (개정) 「자원봉사활동기본법」

2) (기존) 「평창군 포상조례」 → (개정) 「평창군 포상 조례」

3) (기존)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→

(개정)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

3. 참고 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타 :
- 1) 입법예고(25. 3. 31. ~ 25. 4. 2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 - 평창군 공고 제2025-469호, 행정담당관-8108(2025. 3. 28.)호
 - 2) 규제심사 : 규제사무 없음 [기획예산과-5032(2025. 3. 31.)호]
 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 [기획예산과-5032(2025. 3. 31.)호]
 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복지과-13067(2025. 4. 2.)호]
 - 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6727(2025. 4. 29.)호]
 - 6)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[기획예산과-7931(2025. 5. 26.)호]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역량강화와 봉사활동 권장”을 “역량강화, 봉사활동 권장 및 복지 증진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”를 “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7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청년단체의 복지 향상과 친목 도모를 위한 한마음대회, 체육대회

경비

제4조 중 “「평창군 포상조례」”를 “「평창군 포상 조례」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”를 “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경비 지원) 평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청년단체의 역량강화와 봉사활동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</u>의 범위에 속하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자재비, 홍보비</p> <p>2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3. (생략)</p>	<p>제3조(경비 지원) -----</p> <p>-----</p> <p>역량강화, 봉사활동 권장 및 복지 증진 등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.</p> <p>1.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7조-----</p> <p>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청년단체의 복지 향상과 친목 도모를 위한 한마음대회, 체육대회 경비</p> <p>4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
<p>제4조(표창 등) 군수는 봉사활동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단체 또는 그 회원에게 「평창군 포상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(표창 등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「평창군 포상 조례」-----.</p>
<p>제5조(준용) 청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, 지급,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<u>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</u>에 따른다.</p>	<p>제5조(준용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-----.</p>

관 계 법령 발췌

□ 청년기본법 [법률 제19253호]

- 제24조의3[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]**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등의 청년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·절차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청년기본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3720호]

- 제21조의4[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범위]**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다음 각 목의 청년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
 - 가. 청년 고용촉진, 창업지원, 능력개발 지원, 주거지원, 복지증진, 금융생활 지원, 문화활동 지원 등 청년발전에 관한 사업
 - 나. 국제평화증진과 국제협력을 위한 국내외 청년 관련 국제행사
 - 다.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년단체 등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2. 청년지원 활동에 대한 상담·홍보·교육 지원
 3. 그 밖에 청년지원 활동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국무총리가 인정하는 사항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안 제3조(경비 지원) 각 호: 관내 청년단체의 역량강화, 봉사활동 권장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경비 보조금 지원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,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관내 청년단체(평창군청년연합회) 연간 보조금액: 3,500,000원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행정담당관 김 두 기
연락처	(033) 330 - 2210